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b>선 람</b>	<b>기 관 의 장</b>

제367호 2013. 4. 10 (수요일)

## 조 례

- |                 |   |
|-----------------|---|
| ○ 하동군 조례 제2001호 | 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2          |
| ○ 하동군 조례 제2002호 |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71 |
| ○ 하동군 조례 제2003호 | 하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73       |
| ○ 하동군 조례 제2004호 |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6        |
| ○ 하동군 조례 제2005호 |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80             |

## 규 칙

- |                 |                                   |
|-----------------|-----------------------------------|
| ○ 하동군 규칙 제1086호 | 하동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 93 |
|-----------------|-----------------------------------|

## 공 고

- |                     |  |
|---------------------|--|
| ○ 하동군 공고 제2013-256호 |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154 |
| ○ 하동군 공고 제2013-261호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170                    |
| ○ 하동군 공고 제2013-263호 |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 171                  |
| ○ 하동군 공고 제2013-270호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공고 ..... 182           |

<b>회 람</b>									
----------------	--	--	--	--	--	--	--	--	--

## 하 동 군 공 보

( 2 ) 제 367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3년 4월 1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01호

### 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용어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리하는 등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명 띄어쓰기) 하동군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표시변경 등) 하동군 조례 조문에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의 개정·폐지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용어 정비 등) 하동군 조례 본문 중 정비가 필요한 용어 등을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5조(행정서식 등 정비) 하동군 조례 행정서식, 별표에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용어, 직제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3년 4월 1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02호

###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부터 제1조의5까지에 따라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조직 및 운영과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복지위원의 직무 및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 하 동 군 공 보

( 72 ) 제 367 호

처리할 사항

제3조제1항 중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의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⑩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읍·면에 읍·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두되, 제17조에서 정하는 읍·면 복지위원을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제15조 조 명을 “협의체 운영지원”에서 “운영지원”으로 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각 협의체 및 읍·면 협의체”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저소득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자”를 “저소득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족·부자가족·요보호자”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제24조 중 “협의체”를 “각 협의체 및 읍·면 협의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3년 4월 1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03호

## 하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 따라 설치되는 하동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하동군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하동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하동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하 동 군 공 보

( 74 ) 제 367 호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게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전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하동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3년 4월 1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04호

##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하동군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하동군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며, 하동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하동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하동군 소속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

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⑧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⑨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 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하동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3년 4월 1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05호

##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체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병장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 투경찰,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
5. "일반"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대상으로 한다.
6.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인 이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용일수"란 회원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이용료 반환 청구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한 날을 제외한다.

**제3조(운영 시설)** 하동군 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 1. 실내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 2. 부대시설 : 매표소, 매점, 관리사무실 등

**제4조 (시설개방 및 휴관)**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시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 1. 시설별 개방시간 및 휴관, 이용수칙 등
- 2. 시설별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이용방법 등

③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월 1일, 설 및 추석연휴, 매주 화요일
- 2. 기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5조(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 2. 시설의 개·보수
-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이용 시간)** ① 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평일 : 06:00부터 22:00까지
- 2. 토요일, 공휴일 : 09:00부터 18:00까지

②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징수 등)** ①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비회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1일 이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1일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이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

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그날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날 16시까지 우리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개시일 16시까지로 한다.

**제8조 (회원증 발행)** ① 체육시설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한다)은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원 모집 및 회원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회원 등록부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③ 회원증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매표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은 전산처리 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을 적용은 일반 이용료 기준으로 하며, 감면 기준은 "별표2"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이용료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및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이용자가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우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이용료 잔액 반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이용료 잔액 반환

3. 군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이용료 잔액 반환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용이 정지된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이용료 잔액 반환

5. 이용자가 이용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6. 이용자가 이용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7. 1회 이용권 및 월 회원권을 이용하지 않음을 사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초과 이용료)** ①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기본요금의 1/2의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초과이용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제12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자
6.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하거나 퇴장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3조(손해배상)** ①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동시에 진다.

**제14조(체육지도자 등의 근무)** ① 군수는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취미 및 프로그램 관리운영을 위해 기타 강사 등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무하는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기타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하 동 군 공 보

( 84 ) 제 367 호

**제15조(국민체육센터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관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제7조 관련)

(1인 기준 / 단위 : 원)

구 분	기준	1회 이용		월 회원	비고	
		개인	단체			
수영장	어린이	1회 2시간	2,000	1,500	30,000	○ 기준시간 초과 시 마다 기본이용료의 1/2 징수 ○ 단체는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 시에 입장함을 말한 다. ○ 수영장, 헬스장 2 종목을 동시에 이 용하는 자는 이용 료의 80%를 징수 한다.
	청소년 및 군인	“	2,500	2,000	40,000	
	일 반	“	3,000	2,500	50,000	
	경로우대 (65세이상)	“	2,000	1,500	30,000	
헬스장	청소년 및 군인	“	1,500	1,000	30,000	
	일 반	“	2,000	1,500	35,000	
	경로우대 (65세이상)	“	1,000	800	20,000	

**[별표 2]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제9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전액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	전액	
하동군 방문 전지훈련 팀	전액	
하동군 체육회 가맹단체 및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 정기대회	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또는 가족(유공자1명당 1명)의 경우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별표1]의 대상별 이용료 기준
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액 또는 50%	

※ 감면 적용은 일반 이용료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1일 이용권(제7조 관련)

<p>No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b>이용권 원부</b> (보관용)</p> <p style="text-align: center;">금 액 : _____ 원</p> <p>○ 이용시설 : 수영장, 헬스장 ○ 이 용 자 : 어린이, 청소년, 군인                   일반, 경로대상자</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p> <p>수납자 : _____ (인)</p>	<p>No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b>1일 이용권</b></p> <p>○ 이용시설 : 수영장, 헬스장 ○ 이 용 자 : 어린이, 청소년, 군인                   일반, 경로대상자</p> <p style="text-align: center;">입장권은 당일에 한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p> <p style="text-align: center;"><b>하동군 체육시설사업소장 (인)</b></p>
--	---

( 88 ) 제 367 호

【별지 제2호 서식】

## 일일이용권 수불부(제7조 관련)

(단위 : 원)

결 재			월일	구분	적 요	수 입	불출	잔고	비고
담당자	담당주사	소장							

※ 수영장, 헬스장 구분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 수 입 일 계 표(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비회원		회 원		누 계				비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비회원		회 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수 영 장	개 인	야간								
		청소년 및군인								
		일 반								
		경로자								
		소 계								
	단 체	야간								
		청소년 및군인								
		일 반								
		경로자								
		소 계								
계										
헬 스 장	개 인	청소년 및군인								
		일 반								
		경로자								
		소 계								
	계									

하 동 군 공 보

( 90 ) 제 367 호

【별지 제4호 서식】

국민체육센터(일반, 강습)회원가입 신청서(제8조 관련)

성 명			회 원 번 호	
			생 년 월 일	
현 주 소			전화번호	집 : 핸드폰 :
회 비	원	감면사유		
건강상태	양 호( ) 치료 중( ) 회복 중( )	질 환 명	☆ 심장질환자 및 피부질환자 는 필히 기재	
회원구분	수영	일반회원( )	헬스	일반회원( )
		강습회원( )		강습회원( )
희 망 강습시간				
강 습 반				

◇ 회 원 이 용 안 내 ◇

1. 개장시간
  - 평일 : 06:00~22:00
  - 토요일·공휴일 : 09:00 ~ 18:00
2. 정기휴관일 :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매주 화요일
3. 수영장, 헬스장은 1일 1회 2시간 이용가능 합니다.(2회 이상 사용불가)
4. 유아는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하동국민체육센터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하동군 체육시설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 회 원 증(제8조 관련)

전면

후면

<p>No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b>회원증 원부</b> (보관용)</p> <p>금 액 : _____ 원</p> <p>○ 주 소 :</p> <p>○ 성 명 : (성별)</p> <p>○ 생년월일 :</p> <p>○ 기 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p> <p>○ 이용시설 : . . .</p> <p>수납자 : (인)</p>	<p>No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b>회 원 증</b></p> <p>○ 주 소 :</p> <p>○ 성 명 : (성별)</p> <p>○ 생년월일 :</p> <p>○ 기 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p> <p>○ 이용시설 : . . .</p> <p style="text-align: center;">하동군 체육시설사업소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회원 이용 안내</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는 사용하지할 수 없습니다.</li> <li>2. 등록하신 회원증은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실 수 없습니다.</li> <li>3. 회원은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li> <li>4.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li> <li>5. 본 회원증을 미 지참 시는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li> </ol>
--	---	---



하 동 군 공 보

( 92 ) 제 367 호

【별지 제6호 서식】

회 원 등 록 부(제8조 관련)

(단위 : 원)

일련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등록일자	종료일자	회비수납액	비 고

※ 수영장, 헬스장 구분 작성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4월 1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086호

## 하동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규칙의 제명을 한글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용어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리하는 등 규칙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명 띄어쓰기) 하동군 규칙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표시변경 등) 하동군 규칙 조문에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의 개정·폐지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용어 정비 등) 하동군 규칙 본문 중 정비가 필요한 용어 등을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 하 동 군 공 보

( 94 ) 제 367 호

제5조(행정서식 등 정비) 하동군 규칙 행정서식, 별표에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용어, 직제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하동군 공고 제2013 - 256호

##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4 월 3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2. 제안 이유 :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가 1990년 10월 11일 개정 이후 정비되지 않아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보칙으로 알기 쉽게 세분류하고, 사용료 조정, 사용권 양도·재임대 금지, 사용허가취소, 정지, 청문, 사용료 반환, 위탁관리 및 위탁징수에 관한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 골자

가. 제1장 「총칙」으로 목적, 시장 명칭과 위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 시장명칭과 위치, 장날, 용어의 정의 조항 신설

나. 제2장 「사용허가」로 시장사용허가, 신고, 사용자의 관리의무, 사용권의 양도금지, 허가의 취소·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8조)

- 사용허가기간 3년, 사용자 관리의무 조항 신설 및 강화  
: 서식 별지 1~4호 서식 추가

다. 제3장 「사용료」로 시장사용료, 사용료 납기, 원상회복,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2조)

- 사용료 반환 원상회복 조항 신설 : 서식 별지 5호 추가

라. 제4장 「위탁관리」로 시장의 위탁관리운영, 수탁관리인의 책무, 관리인의 지정,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제15조)

- 위탁관리운영 지정 취소 조항 신설

- 마. 제5장 「위탁징수」로 노점사용료의 위탁징수, 수탁징수자 결정 사유, 계약보증금 및 보증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 제19조)
  - 위탁징수 내용별 조항 분류 강화
- 바. 제6장 「보칙」으로 지시감독, 유지관리, 변상금, 과태료, 청문,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 ~ 제26조)
  - 지시감독, 변상금, 청문 조항 신설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25조(사용수익허가취소)  
제26조(청문)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지방재정법
-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 나. 타 시군 입법 선례

-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 남해군 정기·임시 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 의령군 시장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 진주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5.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경제수산과, 전화880-2192, FAX 880-2199, kyk63@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장날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라 함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
2. “점포”라 함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장옥”이라 함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4. “노점”이라 함은 시장부지 및 인접 도로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시장 내 점포, 장옥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말한다.
6. “사용료”라 함은 시장 내 점포, 장옥, 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말한다.
7. “수탁자”라 함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자를 말한다.

### 제 2 장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시장 점포나 장옥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사용기간 연장이나 사용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별지 제1호 및 제1-1호 서식에 의한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노점사용에 관하여는 구술신고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하되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 결정은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공개추첨으로 정한다

다만, 군의 공설시장 특성화 계획과 점포나 장옥의 활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3년의 기간내에서 시장사용을 허가하되 필요한 경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사용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및 제 1-1호 서식에 의한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 허가를 받아야한다.

④ 군수는 시장사용을 허가하거나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장사용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 사용권은 사용자와 사용희망자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사용허가증을 허가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 사용을 허가 받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개월 이상 휴업·폐업 또는 시장사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
2. 상속으로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았을 때
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
4.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제6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권의 양도금지)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하지 못한다.

② 상속 받은 자의 사용기간(갱신요구권 기간을 포함한다.)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면적, 업종 및 설비 내역을 변경하였을 때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 하 동 군 공 보

( 158 ) 제 367 호

3. 상품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시장의 오손 및 시장질서 유지상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4.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사용허가 후 1월 이내에 영업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월 이상 계속 휴업한 때
  6. 공정한 거래를 위반하거나 영업상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7.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한 때
  8. 군수가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3 장 사용료

- 제9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월액 징수에 있어 시장 사용 일수가 16일 이상일 때에는 기준액의 전액을 15일 이하 일 때에는 그 반액을 징수한다.
- 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사용료 납기) 점포와 장육의 사용료는 1년분을 선납하여야 하며, 노점과 노상의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일에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시설현대화 사업 및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해지를 신고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장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회복) 시장 사용자가 허가없이 시장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

### 제 4 장 위탁관리

제13조(관리운영) ①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시장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②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징수자는 노점과 노상의 시장 관리인이 된다.
- ③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수탁관리인의 책무) 시장관리인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1. 상거래질서 확립과 환경 및 시설 개선지도
- 2.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지도
- 3.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 수행
- 4. 관계 법령 준수 및 군수의 지시사항 이행

제15조(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관리인 지정과 위탁 관리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2. 시장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사용료를 징수한 때
- 3.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때
-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 제 5 장 위탁징수

제16조(노점사용료 위탁징수)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점과 노상 사용료를 개인이나 법인 또는 시장번영회 등에 위탁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탁징수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번영회와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로 결정하되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고 낙찰자로 한다.

③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 기준액의 범위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징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7조(계약보증금 및 보증인) ① 수탁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을 납입하지 못 할 때에는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여야 한다.

## 하 동 군 공 보

( 160 ) 제 367 호

제18조(수탁징수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하동군내 주민이 아닌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5.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수탁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9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때
2. 위·수탁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 제 6 장 보 칙

제20조(지시감독) 군수는 시장관리인이나 수탁징수자에게 시장 관리나 시장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유지관리) 군수는 시장의 운영합리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주 상인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는 시장번영회로 하여금 시장내의 청결 질서 유지를 위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2조(변상금) 군수의 허가없이 시장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①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사전 허가 없이 시장을 사용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4조(청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의한 시장 사용 허가의 취소·정지
2. 제19조에 의한 위탁징수 계약의 해지

제25조(준용) 시장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특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점포를 군수의 허가없이 승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가 2014년 6월 30일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하 동 군 공 보

( 162 ) 제 367 호

[별표 1]

하동군 공설시장 명칭과 위치·장날(제2조 관련)

시장명	위 치	장 날	비 고 (운영방법)
하동공설시장	하동읍 읍내리 249	매월 2일, 7일	상설+ 정기
화개장터	화개면 탑리 726-46		상설
약양공설시장	약양면 정서리 271-7	매월 1일, 6일	정기
횡천공설시장	횡천면 횡천리 507-2	매월 5일, 10일	정기
계천공설시장	금남면 계천리 355-3	매월 5일, 10일	정기
진교공설시장	진교면 진교리 302-4	매월 3일, 8일	정기
북천공설시장	북천면 직전리 597-1	매월 4일, 9일	정기
옥종공설시장	옥종면 청룡리 124-15	매월 3일, 8일	정기

[별표 2]

##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 (제9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		
				1급지	2급지	3급지
상설시장	점포	1등지	3.3m <sup>2</sup> 당 월	4,600	3,900	3,200
		2등지	"	3,900	3,200	2,500
		3등지	"	3,200	2,500	1,800
	장옥	1등지	3.3m <sup>2</sup> 당 월	3,300	2,900	2,500
		2등지	"	2,900	2,500	2,100
		3등지	"	2,500	2,100	1,700
	노점	1등지	3.3m <sup>2</sup> 당 월	2,100	1,800	1,500
			3.3m <sup>2</sup> 당 매시일	400	350	300
		2등지	3.3m <sup>2</sup> 당 월	1,800	1,500	1,200
			3.3m <sup>2</sup> 당 매시일	350	300	250
		3등지	3.3m <sup>2</sup> 당 월	1,500	1,200	1,000
			3.3m <sup>2</sup> 당 매시일	300	250	200
정기시장	장옥	1등지	3.3m <sup>2</sup> 당 매시일(종일)	1,100	900	700
			"(일시)	600	500	400
		2등지	"	900	700	500
	3등지	"	500	400	300	
		"	700	500	300	
		"	400	300	200	
	노점	1등지	3.3m <sup>2</sup> 당 매시일	300	250	200
			"(일시)	160	130	100
		2등지	"	250	200	150
3등지	"	130	110	80		
	"	200	150	100		
노상시장	노상	화물자동차	매시일 대당	1,000	800	600
		경운기	"	800	600	500
		리어카	"	600	500	400

○ 1급지 : 하동공설시장, 2급지 : 진교·옥중시장, 3급지 : 기타 시장

○ 정기시장의 종일과 일시의 구분은 3시간 이상을 종일로 한다.

○ 1등지(2면이상 도로 접합장소), 2등지(1면이상 도로 접한 장소), 3등지(그 외)

※ 관광지로서 특수성이 있는 화개장터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한다.



[별지 제 1-1 호 서식]

## 시장사용허가신청 약약서(제4조 관련)

본인은 ( )공설시장 점포(장옥)사용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하고 시장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공설시장 사용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용기간경과 후에도 계속사용을 희망할 때에는 사용만료기일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하겠습니다.
2. 사용허가 받은 점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관리하겠습니다.
3. 점포사용권은 타인에게 절대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않겠습니다.
4. 점포 내에는 일체의 주거용 난방시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이동식 난로, 문어발식 전기코드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6. 점포는 사용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7. 점포의 전기, 수도, 전화사용료는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
8. 점포내외에 추가시설 또는 설비를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겠으며,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9. 사용료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 하겠습니다.
10. 기타,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시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감수하겠음을 약약합니다.

20    년    월    일

사용허가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하동군수 귀하

하 동 군 공 보

( 166 ) 제 367 호

[별지 제2호 서식]

시장 점포(장옥)사용 허가증(제4조 관련)

① 사용시장 명칭			
② 위 치			
③ 사 용 장 소		사용면적	
④ 사 용 기 간			
⑤ 사 용 목 적			
⑥ 사용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⑦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는 사용허가된 점포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관리하여야 한다.</li> <li>㉡ 시장 점포사용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사용을 희망할 때에는 사용만료기일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li> <li>㉢ 시장 점포사용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li> <li>㉣ 점포내에서는 일체의 주거용 난방시설을 하지 못한다.</li> <li>㉤ 이동식 난로, 문어발식 전기코드를 사용하지 못한다.</li> <li>㉥ 점포는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li> <li>㉦ 점포의 전기, 수도, 전화사용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li> <li>㉧ 점포 내외에 추가시설 또는 설비를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li> <li>㉨ 사용료는 납부 지정기간내 납부하여야 한다.</li> <li>㉩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위반시에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감수한다.</li> </ul>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별지 제4호 서식]

(제5조 관련)

시장사용 변경(휴업,폐업,승계 등) 및 해지 신고서

- 시 장 명 :
- 상호 및 호수 : , 호
- 사용자(허가자) 주소 :
- 사용자(허가자) 성명 : 허가번호 :
- 변 경 사 항 : (허가내용, 휴업, 폐업, 승계, 해지, 재산망실 또는 훼손, 기타)
- 변 경 내 용
  - 당초 :
  - 변경 :
- 변 경 사 유 :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 관련)

시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

- 시 장 명 :
- 상호 및 호수 : , 호
- 사용자 성명 :
- 보증금반환 신청액 : 원
- 신 청 사 유 :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하동군수 귀하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공고 제2013-261호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획허가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3. 4. 4 .

## 하 동 군 수

###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

- 포획 목적 : 유해야생동물 구제
- 포획 기간 : 2013. 04. 08 ~ 2013. 06. 07
- 허가 내역

허가지역	허가자 (포획자)	포획방법	포획기간	포획동물 및 수량
옥종면 안계리 내	하재명	총렵 (자력)	2013. 04. 08 ~ 2013. 06. 07	허가기간 내 까지 100마리 이내, 멧돼지 5마리 이내

- 포획제외지역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및 동법 제55조(수렵의 제한),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시 안전수칙)에 해당하는 지역 및 장소
  - 군수가 정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장소

하동군 공고 제2013 - 263호

##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독촉분)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납기 내 고지서 전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2013. 4. 19까지 전국 농협·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5일

## 하 동 군 수

1. 제 목 :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독촉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3. 4. 5. ~ 4. 19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참조
5. 공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교부 및 기타문의 : 하동군청 녹색환경과 (☎ 055 - 880-2565)

## 하 동 군 공 보

( 172 ) 제 367 호

### 2013년도 1기분 정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내역

연 번	비고	납부자	차량번호	송달주소	반송사유
	읍	강영근	경남82거6778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47-3번지 3/2 (96주7764)	이사
	읍	대한개발 주식회사	경남81무2997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63-5	이사
	읍	신영기	88거2329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662 (경남8더1447,경남2더5733)	이사
	읍	봉화건설(주)	96수3453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77-1 (97 나1366)	이사
	읍	청수건설(주)	96우9786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77-1(3층)	이사
	읍	건안기술단 주식회사	88마2403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57-11 2층	수취인불 명
	읍	대흥건설(주)	경남8더3614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11-8	이사
	읍	태성건설(주)	65노1479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63-5 2층 (경남81무6113)	이사
	읍	지산건설(주)	경남81무2000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611-57	이사
	읍	박만호	48어1104	하동군 하동읍 구통길 57	수취인불 명
	읍	홍재표	경남8즈2309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111번지 (경남81무4319,경남1므2982)	이사
	읍	대한예수교침례회 하동교회	79버7780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38-1	이사
	읍	고옥희	경남1보4602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66-14	이사
	읍	(주)가람조경	경남47가4466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64 (경남81무2813)	이사
	읍	안호용	32다9390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355-1 4/1	이사
	읍	안부용	경남47나2650	하동군하동읍신기리355-14/1	이사
	읍	오진택	경남81무5068	하동군 하동읍 신기공항길 12 (86조8671)	이사
	읍	(주)효성건설	84더8355	하동군 비파리 177-1(60로6960)	이사
	읍	김영중	39모6838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23 (경남81무6125)	이사
	읍	우주통상(주)	경남99바6419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44-8	수취인불 명
	읍	이정량	65노1360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71 대경 송림타운101-103 (4대)	이사
	읍	최영환	79버7007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627	이사
	읍	김세희	경남70도1260	하동군 하동읍 동광길9-4	이사
	읍	김태형	96무7355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71 대경송 림타운102-407	방치
	읍	동지산업개발(주)	81가7437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860-2(	이사
	읍	전경옥	경남8즈1226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498번지	이사
	읍	유태섭	경남47가2485	하동군 하동읍 하동공원길93 (경 남81무2894)	수취인불 명

## 하 동 군 공 보

( 173 ) 제 367 호

읍	설경철	97거2324	하동군 하동읍 중앙4길8-8	이사
읍	박태용	경남81무2213	하동군 하동읍 중앙2길 6-5	이사
읍	최현문	경남81무4633	하동군 하동읍 향교2길5-6	이사
읍	대한설비공사	경남81무4039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963번지	이사
읍	김성진	경남71라2590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53-1	이사
읍	추동진	경남81무3990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53-1	이사
읍	김병채	96주2091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16	이사
읍	오성민	경남81나4879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611-53 흥 한로알맨션 나동107	수취인불 명
읍	이창환	97거2257	하동군 하동읍 송림3길 19-4	이사
읍	(주)백두대간	97머7938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38-4	이사
읍	김선희	경남7더6549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35-7	방치
읍	(주)삼열설비	97나1508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18-13	이사
읍	하경남	84거3469	하동군 하동읍 송림3길 8	이사
읍	김준기	경남80두4465	하동군 하동읍 송림1길 10-53	수취인불 명
읍	김진호	63라7968	하동군 하동읍 소재1길9 무지개맨션 나동102	수취인불 명
읍	이선희	97다6122	하동군 하동읍 소재1길 21 흥한 로알맨션 가동306	이사
읍	(주)하전전기	경남71라1366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77번지	이사
읍	송정이	84누3380	하동군 하동읍 송림1길 10-35	
읍	이태옥	52어4997	하동군 하동읍 송림2길 9-4	이사
읍	연정순외1(김광 민)	52거9892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16	이사
읍	김광민	97나1149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24	수취인불 명
읍	정효동	경남81무4112	하동군 하동읍 중서2길 16-3	이사
읍	임균택	90고3635	하동군 하동읍 부용길 8-13	수취인불 명
읍	이인숙	경남81무5158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29	수취인불 명
읍	오영남	경남81무5638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345 카즈텍	이사
읍	최연국	10마4857	하동군 하동읍 하마길 56-4	이사
읍	정규철	21러2049	하동군 하동읍 소재2길 3-6	수취인불 명
읍	박봉희	경남81무5896	하동군 하동읍 수박등길16	주소불명
읍	강경채	92고8563	하동군 하동읍 소재1길14 (96보 1902)	수취인불 명
읍	박승철	39모6690	하동군 하동읍 하마길 35	수취인불 명
읍	박진리	79머6241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120	이사
읍	부영미	경남1누3004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57	이사
읍	양성백	97거2019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28번지 대경송림타운 102-808	방치
읍	최말선외1	52거9427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2174 미도빌라 가동501	이사
읍	홍종원	23라5098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143 신촌빌 라205호	이사

## 하 동 군 공 보

( 174 ) 제 367 호

	읍	황경규	경남81무5737	하동군 하동읍 산복2길77-1 연화 연립주택102호	방치
	읍	김영화	경남8즈1554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239번지 1/3	수취인불 명
	읍	박영식	경남81구1802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232	수취인불 명
	읍	이병기	31도7533	하동군 하동읍 청년회관길19	이사
	읍	조용표	96무8808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200-12	이사
	읍	소용길	경남47나2043	하동군 하동읍 부두길7 한영@307 호	이사
	읍	변영길	97거2969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005-1	이사
	읍	김범섭	50고8130	하동군 하동읍 오룡정길 4-1	이사
	읍	임영례	근우여관	하동군 하동읍 송림2길 9-1	수취인불 명
	읍	최현희	롯데마트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37-13	이사
	읍	황규식	최가외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99-3 8/2	이사
	읍	김남균	코코외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318 홍삼건강만들기	이사
	읍	정동민	하동뷔페.알뜰 살뜰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320-1	이사
	읍	조왕래	털보세차장	하동군 하동읍 하마길 56-4	이사
	읍	김연자	제일안경외	하동군 하동읍 하마길 56-4	이사
	읍	정원경	월드파크	하동군 하동읍 흥흥리 1612	이사
	읍	김형준	80무9222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800-8 남경주택 201호	이사
	읍	하길용	경남34러5749	사천시 벌리동 256-8 28/2	주소불명
	읍	세양정보통신(주)	경남81무2488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 614번지 1호 톱텔레콤주식회사	수취인불 명
	읍	김희호	경남81무3208	고성군 대가면 갈천리 2-3번지 5/1	수취인불 명
	읍	황용순	17나513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430-4 번지 11/1	수취인불 명
	읍	정형자(황선명)	03라1963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40-1 6/3	이사
	읍	황선명	96우7013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40-1 6/3 (경남80구1163), 주소변경후재송달 (진례면고모로:이사)	이사
	읍	이인정	65노4585	전남 광양시 금호동 720번지 장 미@23-204호	방치
	적량	경원건설(주)	경남81무4524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823번지	이사
	적량	김영철	경남80무6754	하동군 적량면 하동산길12-27	수취인불 명
	적량	정상건	경남80나3299	하동군적량면공월로11 (68부 5483)	이사
	적량	김순근	97거2946	하동군 적량면 황금길42	수취인불 명
	적량	송종찬	95루8970	하동군 하동읍 나루터길 19	이사
	적량	김상옥	47두9023	하동군 적량면 공월길 52	이사
	적량	한진규	경남81나5923	하동군 적량면 적량로 96 (97나 1280)	이사
	적량	정창민	65노4492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141	이사



## 하 동 군 공 보

( 175 ) 제 367 호

적량	오태영	경남7러1452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35 (경남7느 1520,97나1722)	이사
적량	김창민	96무8131	하동군 적량면 적량로 113	수취인불명
적량	이종규	95나2674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59-11	수취인불명
적량	남기복	64서4658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69-11	수취인불명
적량	김상기	80거4189	하동군 적량면 신촌길6-16	이사
적량	대진종합건설	경남47가2884	하동군적량면고절리1162-4(폐업)	수취인불명
적량	대흥산업(주)	경남81무9039	하동군적량면동산리1110번지 (폐업)	수취인불명
적량	이씨엠(주)하동지점	96무7089	하동군적량면동산리1109 (폐업)	수취인불명
적량	(주)이엔티	경남47나3129	하동군적량면고절리1162-4(폐업) 공설운동장로254	수취인불명
적량	(주)용화	경남81무5385	하동군적량면동산리1107(폐업)	수취인불명
적량	이정훈	경남80루7293	하동군 적량면 원우길43-20	이사
적량	이성녀	97나1242	하동군 적량면 신촌길6-16	수취인불명
적량	여도호외	85수1860	하동군 적량면 신촌길6-16	수취인불명
적량	정혜숙	21모8673	하동군 적량면 상동산길 5-10	수취인불명
적량	이경철	86조8723	하동군 적량면 상동산길 5-10	수취인불명
적량	서원준	15구9854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48 (거제시 탐곡로4길31(아주동)주소 불명 반송 )	수취인불명
적량	신현섭	96루1698	하동군 적량면 서당마을길 16-3	이사
적량	김성권	경남70누5727	하동군 적량면 적량로 72-2	수취인불명
적량	양재성	용소가든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18-1	이사
적량	김영태	경남8스15920	경남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668-5	이사
적량	안진근	경남81고1604	서울 종로구 평창동 54-1	수취인불명
청암	김종득	84마2556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672	수취인불명
청암	유재천	11더5884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620-4	이사
청암	강정훈	경남71라2403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2570-10 (경남81도3176)	이사
청암	강대주	경남81도3176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1665-2 5/5	이사
청암	권오현외권영두	09보2537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436-8	주소불명
청암	정대성	51노1306	하동군 청암면 도인촌길 63-5	수취인불명

## 하 동 군 공 보

( 176 ) 제 367 호

	금성	최성암	94러6858	하동군 금성면 명덕길8	수취인불명
	금성	박재홍	경남7도4435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90	이사
	금성	박점자	84나7858	하동군 금성면 내도청도길 68	이사
	금성	(주)케이통운	경남99바9103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308번지	수취인불명
	금성	강통일	96무7566	하동군 금성면 금성중앙길 171	이사
	금성	(유)해동기업	경남71라1576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675번지	이사
	금성	주식회사 금성환경	80누6357	하동군 금성면 금성중앙길75	이사
	금성	김진봉	경남81무4489	하동군금성면갈사리184 4/6	이사
	금성	한대봉	97거2485	하동군 금성면 고포마을길46	이사
	금성	전덕을외1	97나1811	하동군 금성면 고포마을길34	이사
	금성	진홍태	경남81무3650	하동군 금성면 길목길217	이사
	금성	김은미	97거5944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485 해양파크빌105-201	이사
	금성	남재동	97거2531	하동군 금성면 명덕윗담길11	이사
	금성	김항곤	경남1노1649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90-16	이사
	금성	오진옥	89머3769	하동군 금성면 명덕길208-4	이사
	금성	이성숙	40수9664	하동군 금성면 향도길 38-6	이사
	금성	농업회사법인금성합명회사	경남80누1002	하동군 금성면 광포새감길37-114	수취인불명
	금성	김종부	04부8849	하동군 금성면 명덕길 136	이사
	금성	김경희	남부식당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377	주소불명
	금성	김웅일	전도별장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40	이사
	금남	손성자	사랑초펜션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산97번지8호	주소불명
	금성	손외순	37가5971	김해시 삼정동 944-1 김태형	주소불명
	금성	하정식	경남82너3889	김해시 생림면 장재로429번길 78-27	이사
	금성	박상호	97나1792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433번지33/16	주소불명
	횡천	김인순	51고3984	하동군 횡천면 횡보길 12-28	수취인불명
	횡천	서선호	87나4183	하동군 횡천면 들고지로 195-2	이사
	횡천	최승호	93거2823	하동군 횡천면 전대1길117	수취인불명
	횡천	박동목	94구3337	하동군 횡천면 문화1길16	이사
	횡천	(주)현대베스트건설	01루8442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147 횡천마트	수취인불명
	횡천	박종근	70누1231	하동군 횡천면 문화2길 21-1	이사
	횡천	정충임	89다4120	하동군 횡천면 문화1길 9	수취인불명
	횡천	김영일	경남47나2076	진주시 강남로189번길 27-13(칠암동)	주소불명

## 하 동 군 공 보

( 177 ) 제 367 호

악양	홍석범	80두9943	하동군 악양면 매계1길 46-4	이사
악양	최재순	81누4217	하동군 악양면 매계1길 23-4	이사
악양	임현택	경남1라4128	하동군 악양면 덕기길 7-17	이사
악양	이현재	94누3678	하동군 악양면 신흥길111-2 (이강철)	이사
악양	이해인	88버6041	하동군 악양면 악양통로 346-16	주소불명
악양	(주)하동야생차테크	50부9316	하동군 악양면 하중대길 44-9	이사
악양	박진성	96무8989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1가 305-161번지 9/1	수취인불명
악양	안양금	43나8195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금로 118-1	이사
악양	손형석	솔잎한우외1	창원시 용호동 72번지 7/4 용지아파트 319-402	방치
화개	김재근	80노8498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282	이사
화개	최명철	80다5459	하동군 화개면 원탑1길32	이사
화개	(주)한백개발	65노3595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821	수취인불명
화개	신태성	경남7노7227	하동군 화개면 상덕길 53	수취인불명
화개	황종하	65노4620	하동군 화개면 의신길 5	이사
화개	이재익	65노1042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27-18	이사
화개	김수경	96수1382	하동군 화개면 원탑1길 28-14	수취인불명
화개	김형택	87어3455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8-4	수취인불명
화개	최광훈	97나1362	하동군 화개면 탑리 336번지 3/2	이사
화개	임성춘	97나1309	하동군 화개면 원탑1길	수취인불명
화개	임용경	56오4009	하동군 화개면 법하길 10	이사
화개	김보향	반딧불식당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66-3	이사
옥종	박춘희	경남81머1297	하동군 옥종면 주포중앙길 29-1	수취인불명
옥종	정충식	경남80무1750	하동군 옥종면 북방우회길 40-28	이사
옥종	정효점	52두6908	하동군 옥종면 세종태실로 573	이사
옥종	이인우	경남7모3106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209-3	수취인불명
옥종	(주)한창종합건설	97거5316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22번지	이사
옥종	신흥철	경남80무4807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317 7/1	이사
옥종	강해숙	65거3018	하동군 옥종면 호계천로 108	이사
옥종	하태준	87루7286	하동군 옥종면 구시장길 35-8 (자동이체)	수취인불명

## 하 동 군 공 보

( 178 ) 제 367 호

옥종	(주)풍성산업	경남71라2594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435-7	이사
옥종	(주)태화이엔씨	79버7668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435-7	이사
옥종	동남연와산업(주)	경남7도4412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산21번지	이사
옥종	(주)동명산업	경남8코2847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53	이사
옥종	전선희	54오8783	하동군 옥종면 미산길 51-9	수취인불명
옥종	강명숙	08도7833	하동군 옥종면 세종태실로 581	이사
옥종	부평건설(주)	경남7느2532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215-5	이사
옥종	성현국	경남39다8693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728	이사
옥종	김애화	90고3778	하동군 옥종면 주포중앙길17-5	이사
옥종	양오석	경남81두2735	하동군 옥종면 옥종중앙길 5	수취거절
옥종	강도영	경남80무4092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587	이사
옥종	장근섭	딸기집하장	하동군 옥종면 주포중앙길 17-5	이사
옥종	이민중	경남7도9648	진주시 강남로 305(망경동)	주소불명
양보	유성종합건설(주)	96루3932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803번지	이사
양보	손오현	79노1031	하동군 양보면 집흘길 38	수취인불명
양보	이시목	97거4541	하동군 양보면 신정길 15-11	이사
양보	임병희	경남81무1679	진주시 문산읍 갈곡길16번길 28-9	수취인불명
양보	이갑주	경남81거6914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1176-11호	이사
북천	이동희	39모6769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99 (사천시 사천읍 역사길8 :수취인불명)	수취인불명
북천		81조6032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2017 (경남82너3620)	이사
북천	유영현	39너7250	하동군 북천면 모성길 64	이사
북천	하수연	90러3789	하동군 북천면 곤북로 1073-5	수취인불명
북천	윤성철	48누2588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253-21	이사
북천	신정우	84라1844	하동군 북천면 옥단로406-1	수취인부재
북천	이동희	39모6769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280-3	이사
북천	이형주	65두2938	진주시 신안동 20번지 현대 @105-102	방치
고전	박대중	92소4662외1	하동군 고전면 명교길 57	이사
고전	(유)하성건설	경남81무6471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1147-9	이사
고전	우정호	35다6376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27-6	이사
고전	김평정	96루5093	하동군 고전면 신월길 7	이사

## 하 동 군 공 보

( 179 ) 제 367 호

고전	강석현	04부1771	하동군 고전면 월진길 32-5(경남 81무2608)	이사
고전	다음조경(주)	79서8660	하동군 고전면 재첩길 5-2	이사
고전	김주식	경남80두4418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579	이사
고전	한의	79고8111	하동군 고전면 시목길 36	이사
고전	김남구	81마3403	하동군 고전면 재첩길31-6(경남 81무9064) 광주동구 밤실로4번길 15-7(13/1)	수취인불명
고전	이재운	경남81무9002	창원시 소계동 721-19번지	방치
고전	서경한	경남7느1300	경기화성시장안면수촌리688번지 (고전전도126번으로주소변경) *경기.고전 반송	이사
진교	박도선	경남81무5701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90-3	이사
진교	(주)창림토건	83마8578	하동군 진교면 선창길 4-2층	이사
진교	주현태	65누2500	하동군 진교면 들포길 38 미진스위트빌103-108	방치
진교	정옥순.서현철	65다5834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57	이사
진교	박정삼	경남70러6220	하동군 진교면 들포길38 미진스위트빌103-1306	이사
진교	전명동	경남81무4880	하동군 진교면 진교막곡길1 다세대주택 402호	이사
진교	최현기	65거7816	하동군 진교면 선창길10	이사
진교	김정태	경남47나1373	하동군 진교면 선창길10	이사
진교	백병길	66무7938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43	이사
진교	(주)애림	66무7773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1-21	이사
진교	강영수	경남80두7027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415	이사
진교	(주)세림조경건설	경남34더2141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02-145	이사
진교	전광복	55마4521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109-2	이사
진교	조동식	97나1637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46	이사
진교	합자회사 진교기업농업회사	경남81무1675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51-175	이사
진교	이우영	경남81무5192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45	이사
진교	홍승우	경남82나1678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43	이사
진교	진웅건설(주)	13부7437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02-24	이사
진교	정정미	97나1961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191	이사
진교	이선우	97거2745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689 (경남71라1570)	이사
진교	(주)경남아스콘	경남47나2482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377-1	이사
진교	홍종열	경남81마7244	하동군 진교면 월운길206-3	주소불명
진교	황봉학	경남812287	하동군 진교면 진양로 10-1	이사
진교	김동근	경남70더4410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16-2 1/3	이사
진교	정현우	경남80무2541	하동군 진교면 진양로 58-9	이사
진교	윤무승	97나1349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93	수취인불명
진교	홍순직	97더2097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93	수취인불명
진교	유한회사남진토건	경남82마6783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1-39	이사

## 하 동 군 공 보

( 180 ) 제 367 호

진교	유영성	51고3489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이사
진교	구경선	87보8462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25	이사
진교	정재조	97너3505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93	수취인불명
진교	(주)케이티씨	65다4143	하동군 진교면 안심리 257-5	이사
진교	이영태	경남81무5632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93	수취인불명
진교	(주)대상건설	경남8브1669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127	이사
진교	(주)신우	93다6091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802번지	이사
진교	(주)오리엔탈중공업	경남70고2822	하동군 진교면 신안길 2	이사
진교	한윤성	경남7모7365	하동군진교면 양포리 292 (사망말소)	이사
진교	하남축산영농조합	경남81무1567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684-1	이사
진교	김경환	97거5555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90-3	이사
진교	(주)길따라	경남72바4414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210-1 (하동고속관광)	이사
진교	대한예수교장로회 진교교회(한진준)	75머6009	하동군 진교면 고통리 467	이사
진교	(주)삼화토건	97소4941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02-424	이사
진교	한중승	식당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442-1 8/2	이사
진교	노기현	65노3997	전남 순천시 옥천길 82	이사
진교	윤영삼	경남47가9590	광양시중동1360-24번지10/2305호 (진교면미진@101-801변경):진교도이사	이사
진교	이귀우	경남81무4642	경기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18	수취인불명
금남	김홍진	52부5824	하동군 금남면 한재길 132	이사
금남	김현철	97나3863	하동군 금남면 주교로 169-21	이사
금남	(주)하이랜드	경남47나2857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1216	이사
금남	(주)미래산업개발	97거2304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986번지	이사
금남	(주)석진산업	경남34너2842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986번지	이사
금남	금도건설(주)	97마9041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973-5	수취인불명
금남	WANGL IFEN	64두4506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8번지	이사
금남	하남토건(주)	경남80루5951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208	이사
금남	노길순	92러1730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50-2	이사
금남	조충열	09라9604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254-154	이사
금남	박은아	86부6730	하동군 금남면 제면당길 129-14	이사
금남	김윤수	65너2259	하동군 금남면 경제산업로 100-6	이사
금남	이재성	84마4438	하동군 금남면 소송양달길98	이사
금남	(주)창대건설	경남82너4176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689-1	이사
금남	조현몽	89저6009	하동군 금남면 금오길 152	이사
금남	윤대경	96무7605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99번지 7/2 (경남81무2249)	이사

하 동 군 공 보

( 181 ) 제 367 호

금남	전귀자	94어7726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12	이사
금남	박종식	52거9186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221-2번지 4/3	이사
금남	(자)한려주류상사	96무6619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731-1	이사
금남	천명수	04부1827	하동군 금남면 조금2길 28-3	이사
금남	박정애, 학섬횃집	97나1940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24-3 노량빌라101호	방치
금남	진준근	97거4974	하동군 금남면 영천안길79 동아빌라 B동201호	이사
금남	(주)신한중공업지점	86조8793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32번지	이사
금남	전영지	전도당구장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986번지 8/2	수취인불명
금남	강동용	전기전자철물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986번지 8/2	이사
금남	이행돌	할매재첩식당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537-1 하동할매재첩식당	이사

하동군공고 제2013-270호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공고

2013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완료되어 아래와 같이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열람기간 : 2013년 4월 12일 ~ 5월 1일
- 열람장소 : 군청 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마을회관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sup>2</sup>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3년 4월 12일 ~ 5월 1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처 : 군청 민원과, 읍·면 민원실
- 제출방법 : 군,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서식에 기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FAX로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055-880-2122~5)

2013년 4월 12일

하 동 군 수